#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8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한정애·서영교·이학영

박지원 · 송옥주 · 민병덕

이수진 • 민형배 • 김주영

박홍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반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재보험료를"을 "산재보험료 및 선거사무장등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선거사무장등의 수 × 제135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의 선거비용제한액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3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 사무장등(활동보조인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경우 총 수당 인상액과 선거사무장등의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 -----산재보험 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료 및 선거사무장등의 「고용 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각각 입에 소요되는 총 고용보험료 가산하여야 한다. 중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총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신 설>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선거사무장등의 수 × 제135 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의 금액 × 해당 선거의 선거 운동기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의 고
	용보험료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